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이종배
이성권 · 우재준 · 서명옥
배준영 · 김예지 · 진종오
송석준 · 강명구 · 김성원
조은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

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구개발 활동과”를 “연구개발 활동 및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과”로 한다.

제4조3항제5호 중 “보건의료기술”을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u>연구개발 활동과</u>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 <u>연구개발 활동 및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양성과</u> ----- ----- -----.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u>보건의료기술</u>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6. (생략) ④ ~ ⑥ (생략) <u><신 설></u>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u>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u>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특례</u>)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